

「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」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“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적용이자율 및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 (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)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온 익일(이하 '원가일'이라 함)에 원금에 더합니다.
-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적용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자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
제 5 조 수수료 우대

이 예금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당월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된 경우,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수수료우대 서비스가 월 10회 면제됩니다. 단, 가입일로부터 익월말일까지는 퇴직공제금 이체와 상관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전자금융(인터넷/텔레뱅킹/스마트폰 banking)을 통한 KEB하나은행/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
2.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시 수수료 면제

제 6 조 입금제한

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2조의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압류 금지 퇴직공제금 등에 한하며,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.

제 7 조 거래제한

-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.
-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 예금은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.
-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(한도대출)의 대출계좌(기본계좌)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-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·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·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·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<부칙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